

# 반송불능 우편물 습득금 국고귀속 공고

[서울중랑우체국 공고 제2026-5호]

서울중랑우체국에서는 보관기간이 경과한 반송불능 우편물 습득금에 대해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[국고예의 귀속], 우편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귀속을 공고합니다.

## - 공고 사항 -

1. 국고귀속일 : 2026.3.12.(목)

2. 국고귀속대상

반송불능우편물	발송인	우편물 보관일	금 액(원)
6100101222015	고○숙	2025.2.20.	100,000

3. 국고귀속 범위: 보관기간 경과한 반송불능 우편물 습득금

4. 환급기간: 공고기간 내(2026.2.12. ~ 2026.3.11.)

5. 환급장소: 서울중랑우체국 4층 지원과 방문

6. 환급청구 시 구비서류

가. 실명확인증표

나. 본인 명의 계좌이체 통장 사본 1부

다. 본인 아닌 경우는 아래 서류 추가

1) 위임장(인감 날인, 오시는 분 신분증) 1부

2) 인감증명서 1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랑우체국 지원과(02-2239-0514)로 연락 바랍니다.

2026년 2월 12일

서울중랑우체국장